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메시지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포스코 PH솔루션 대표이사 고찬주 입니다.

우리 포스코PH솔루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해 2023년 9월 20일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를 도입 하였습니다. CP도입을 계기로 회사는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내부 점검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윤리적,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외부로부터 각종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환경은 ESG경영, 윤리경영, 준법실천이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가 되는 시대로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법경영에 반하여 얻어진 성과는 단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을 악화 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할 때 공정거래 준수 및 실천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한마음으로 동참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PH솔루션 대표이사

고 찬 주

자율준수관리자 발간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상명 입니다.

시대는 점점 기업의 ESG경영 강화 및 고도화 등 기업에 요구되는 법적·사회적 가치의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요구 및 책임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그룹의 일원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사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은 당사의 CP운영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규 관련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기본적 지식 이해, 관련 법령 정보, 체크리스트 등을 넣었습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은 본 편람의 내용을 스스로 숙지하고 준수 한다면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달성될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대외환경, 정책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임직원 여러분들의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 상 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문



본인은 회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및 협력사·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윤리적 기업으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관련업계의 임직원과는 법에 저촉되는 모임, 연락, 정보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겠으며, 불가피한 접촉 시 담합 의심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 고객사와 거래 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열 회사와 거래 시, 합리적인 계약사유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사·공급사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구두 발주,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위탁 취소·기술자료 요청 및 유용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소속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임직원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승인 및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 불공정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없이 공정거래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서약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회사로부터의 징계나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24. 1. .

포스코PH솔루션

직번 :

성명 :

(서약)

CONTENTS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발간사	03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문	05

Part I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개요	10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핵심 8요소	12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13
4.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14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16

Part II | 공정거래법 실무

1. 공정거래법 개관	22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24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34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50
5. 부당지원행위 규제	59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75
7.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85
8.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93

Part III | 하도급법 실무_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하도급법의 이해	102
2. 계약 체결 관련 의무	104
3.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의무	112
4. 계약 이행 관련 의무	123
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무	131
6. 기술탈취 금지 의무	138
7.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의무	147
8.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49

Part IV |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153
2.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155

Part V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내부시스템 운영 안내

167

Part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개요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핵심 8요소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4.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개요

CP의 개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

■ CP(Compliance Program)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자율준수 편람』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가 작성한 『자발적 법규 준수 프로그램 편람』을 말한다.

■ 목 적

-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 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이해당사자

『회사』 또는 『당사』란 『포스코PH솔루션(주)』를 말한다.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용역업체 및 공급업체, 수급사업자를 말한다. 수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을 말한다.

■ CP의 필요성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
- ②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 경제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다.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①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핵심 8요소

CP핵심 8대 운영요소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운영 요소를 충족해야 함.

[공정거래 CP핵심 8대 운영 요소]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사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또는 문서를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	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제작·활용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	자율준수편람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모든 임직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감사 및 감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임직원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운용 하되, 재발 방지 조치 마련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개선조치 마련

3.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 CP 등급 평가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CP 모범 운영 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 인센티브(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CP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함.

▶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인 센 티 브	등급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간행물 공표크기/ 매체수	전자매체 공표
기간 단축	AAA	20%	2년	2단계 하향	1단계 하향
	AA	15%	1년6개월		
	A	-	1년		

※ 인센티브 적용 제외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을 받은 경우
2.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4.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합의체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 주요 기능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 수령 등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 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경제력 집중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 경쟁정책(1) : 공정거래법
- 기업거래 정책(5)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 정책(7) :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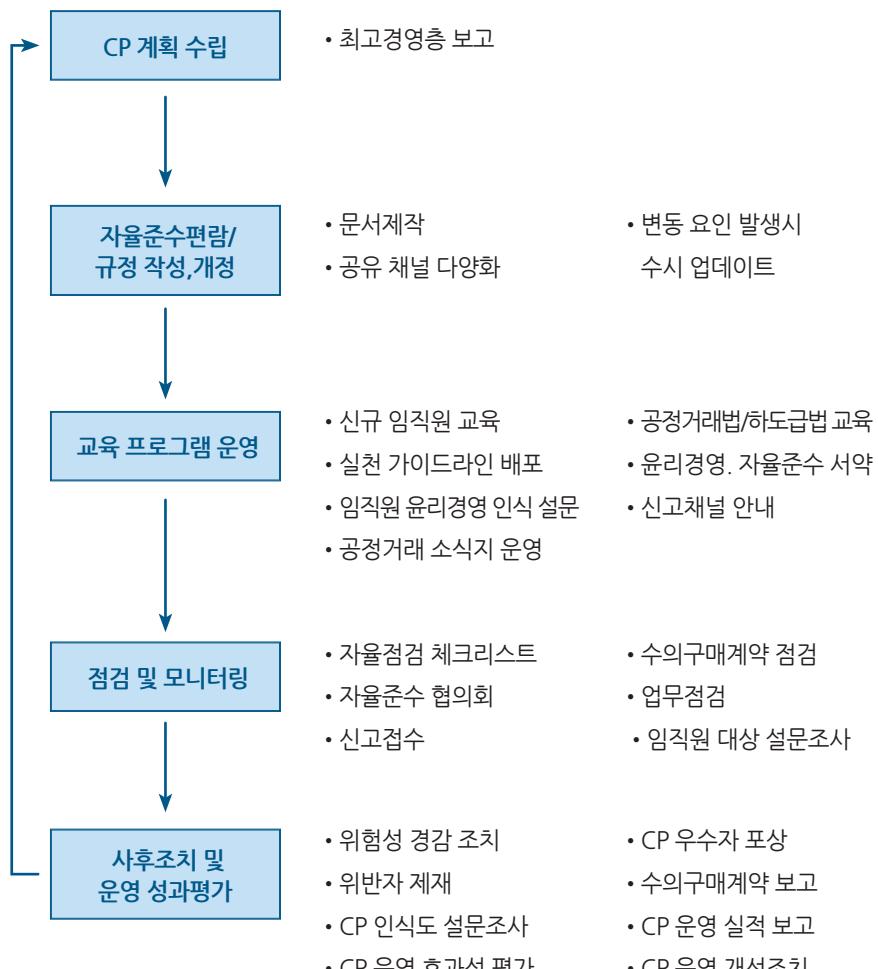
■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령 이해

법률명		기본 개념
경쟁 정책	공정 거래법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 공동행위·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기업 거래 정책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유통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
	가맹 사업법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
	대리점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
	제조물 책임법	·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관련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전 향상·국민경제 건전 발전에 이바지
소비자 정책	약관 규제법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내용의 약관을 규제
	표시 광고법	· 상품,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
	할부 거래법	· 할부 계약 및 선불식 할부 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
	방문 판매법	·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자상 거래법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비자 기본법	·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정책 종합적 추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	· 상부상조 정신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 협동조합 활동 촉진함으로써 조합원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5. 포스코PH솔루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현황



자율준수협의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 조직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 기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제재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지원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및 활동사항 지원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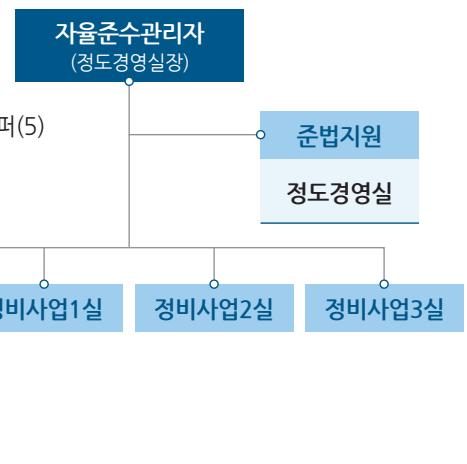
■ 운영

- 최소 반기 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각 위원은 공정거래 실천리더들을 선정하여 자율준수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 구성

- 자율준수협의회 구성(17)

- 자율준수관리자 (1)
- 협의회 간사 (1)
- 그룹별 위원(5) / 실천리더(5) / 헬퍼(5)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 R&R

구 분	역 할
자율준수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총괄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재·개정 사항등을 CP운영지침 반영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성과 분석 · CP 활동 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 공정거래 실천리더 지휘 감독하며, 소속부서 CP 운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으로서 소속부서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실천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실무적 지원 · 부서내 공정거래 관련 교육, 상담 업무 및 자문 · 부서내 자율점검활동 주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선사항 발굴
헬 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리더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 · 사후 검증 업무 시행

Part II

공정거래법 실무



1. 공정거래법 개관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5. 부당지원행위 규제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7.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8.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 공정거래법 개관

1) 공정거래법의 의의

- 정식 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2)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은 ‘시장 구조’의 측면과 ‘거래 행태’의 측면에서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서 공정한 경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 ‘시장구조’를 규율 :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9조(기업 결합의 제한)
 - 예) ‘거래행태’를 규율 :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46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3)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 및 심사 절차

- 01 사건인지
 - 직권인지 또는 신고(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입력
- 02 조사
 -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조사, 진술요구 등
 - 조사방해시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물리력 행사 시)
- 03 조사 후 조치
 - 협의가 없는 경우 : 심사관 전결로 종결
 - 협의가 있는 경우 : 심사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 04 위원회 상정
 -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후 통상 2~3주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 05 위원회 심의·의결
 - 일반인에게 공개, 피심인과 심사관이 상호공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내 의결서 작성

불복시
 - 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이 존재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조항 중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 고발권 존재
 - 위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의무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공정거래법 제129조

-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 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사업자 단체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부당공동행위, 보복조치 등 특정 규정 위반시 실 손해의 3배 미만 범위 내 손해배상 책임 부담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및 금지 유형

- 의의

-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물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 등을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 등의 명칭으로 알려짐

- 금지 유형 :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

- ① 가격결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② 거래조건 결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의 결정
- ③ 생산·출고 등 제한 : 상품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 거래 제한
- ④ 거래제한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⑤ 시설투자 제한 :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
- ⑥ 상품제한 :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시 상품의 종류, 규격의 제한
- ⑦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
- ⑧ 타사업자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사업내용을 방해 또는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⑨ 정보교환 :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합의'의 의미 및 실행 행위

-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합의는 구두합의와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며, 계약이나 협정 등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사업자간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
- 또한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다른쪽 당사자는 당해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제재될 수 있음

- 합의의 추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 횟수, 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담합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음이 입증된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직 간접적인 의사 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해당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밀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 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요인이 없고,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가격이 동시에 인상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 시장상황에 비추어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당해 산업구조상 협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의 일치가 어려움에도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II. 공정거래법 실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합의 추정의 번복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추정을 번복 가능

외형상의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단순 우연, 행정지도,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른 외형상 일치의 발생

-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경에 사업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경우
-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물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일치가 일어난 경우

3)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Leniency - 리니언시 제도)

○ 의의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협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감경 또는 면제대상

자진 신고자(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 (아래 4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 하였을 것
 - ③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였을 것
 - ④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조사 협조자(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 협조한 자 (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② 위 자진 신고자 조건의 ①, ③, ④를 충족할 것

기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과징금 50%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위 조사 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시작 후 조사 협조자 (아래 2가지 조건 만족 필요)
 - ①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 ② 위 과징금 및 시정조치 면제' 항목의 ③, ④ 조건을 충족할 것

II. 공정거래법 실무

4) 부당 공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의 제재

시정명령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합의의 파기를 명령

과징금

-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의 과징금을 부과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부당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 :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개월

부당 공동행위

사례

사례 01

24개 사업자의 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 사건 (21. 7. 26.)

- 법 위반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외

(주)삼일씨엔에스 외 23개사는 '08.4. ~ '17.1.까지 아파트 등 건설 시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콘크리트파일 (PHC 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6,500억원 규모 담합 실행

* PHC 파일 :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활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 24개사 : 대기업 및 중견기업 6개사, 중소기업 18개사

(제재)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1,018억 부과

[PHC파일 입찰 담합 관련 제재 경과]

- '16.1. 공정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과징금 5억 부과
- 비회원사의 신기술 적용 방해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 '16.7. 검찰 입찰 방해죄 등으로 23명 기소 → '17년유죄 확정
- 협동조합 임원 3명 (구속), 업체 대표 3명 (구속) 및 임직원 17명 (불구속)
- '17.1. 공정위, 입찰 담합 조사 개시
- '20.6. 공정위, '관수 시장' 담합 건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4억 부과
- '21.7. 공정위, '민수 시장' 담합 건 제재

II. 공정거래법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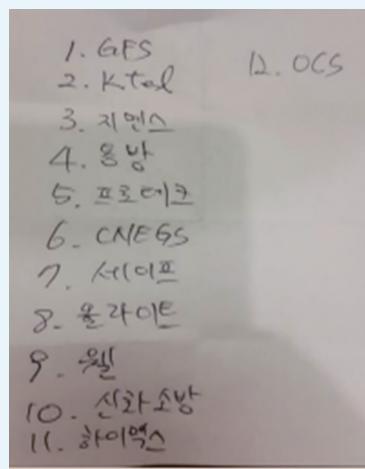
사례
02

23개사의 자동화 재탐지 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 담합 사건 ('2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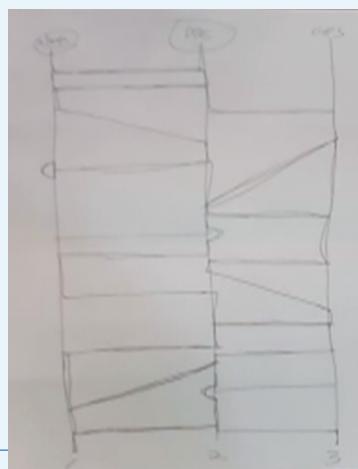
• 법 위반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 ▶ 지멘스(주)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사가 6년간 실시한 총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
- ▶ 23개 담합업체들은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 입찰별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를 결정

롯데건설 사례(광명 아울렛 등 16건)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낙찰 순번 결정



한라 사례(송도 현대아울렛 등 4건)
: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 순번 결정



(제재) 23개사 모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 회생절차를 거친 (주)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원 부과

사례
03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사건 ('21.11.17.)

• 법 위반행위: 舊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금지' 위반

- ▶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 위해 '10. 3. ~ '19. 6.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

** 담합내용상세

1. ('10년 담합) 연체료 공동 도입 및 연체료 수준 합의, 실행
- 연체료율 : 연체 대금의 2%
2. ('12년 담합) 연체료율 공동으로 5% 인상 합의, 실행
3. ('13년 담합 및 이후) 정부/언론의 인하 압력 공동 대응, 기존 담합 내용 최대한 유지, 인하시는 연체료율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합의 실행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9.3억원 부과, KG모빌리언스 / SK플래닛 검찰 고발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성실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단위:백만원)
1	KG모빌리언스	8,752
2	다날	5,387
3	SK플래닛	855
4	갤럭시아	1,941
합 계		16,935

II. 공정거래법 실무

부당 공동행위

Q&A

Q

업체 관계자들끼리 가격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격 수준에 대한 의사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인지?

A

-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협정·동의서 등의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예로, 렌터카 업체들이 공식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수 개의 회사가 모두 본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조합의 대여 요금참고안이 결정되었으며, 렌터카 업체들이 이에 따라 대여 요금을 신고한 사안에서, 업체들이 순차적 의사 연락에 따라 일정 지역의 차종별 자동차 대여 요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음(서울고법 2016.10.7. 선고 2014누70442 판결)
- ▶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암묵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가격 의사 교환 행위 자체가 암묵적 가격 합의 등으로 비춰질 소지 존재(공식회의 여부는 불문)

Q

합리적 제품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려는 경우와 같이, 실제 수요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 담합이 성립하는 것인지?

A

- ▶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에 있음
- ▶ 따라서,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이 물품 구매 가격을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제품 분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 할 것임

Q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기술향상 및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눈 후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경우에만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이를 허용하고 있음.
 - ① 산업합리화 :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
 - ② 연구·기술개발 :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소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
 - ③ 불황극복 : 특정 상품 또는 용역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 ④ 산업구조의 조정: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 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효율 및 국제경쟁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 ⑤ 거래 조건의 합리화 : 거래 조건의 합리화로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의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 ⑥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舊 공정거래법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등)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증을 교부 받으면 됨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1)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개요

- 의의

- 불공정거래 행위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9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부당지원 행위(일감몰아주기·통행세)'로, 일반적으로 다른 불공정 행위(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는 구분하여 판단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의미

- 공정위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를 "부당하게"와 같은 의미로 해석
- 구체적으로는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거나(경쟁제한성), 경쟁 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함(불공정성)을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 판단

- '공정거래 저해성' (법 제45조 제1항 본문) '부당성'(법 제45 제1항 각호)이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위 심사 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경쟁 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 또는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의 사용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II. 공정거래법 실무

2)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거래거절)

-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단독 거래거절

-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품·용역 수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

- ①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 ②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 ③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거래거절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위반 유형

- 공급·구입 거절,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실상 거절, 거래수량이나 내용의 현저한 제한 등
- 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제조업자에게 부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자기가 지정하는 거래처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

-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예상되어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거절에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사업 영위에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3)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차별적 취급)

- 차별적 취급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내용으로 거래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것

가격·거래조건 차별의 예시

-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 지급 비율 등을 현저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타 회사에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의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경우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 실무

4)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

부당염매

-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기관 구매 입찰에서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되어 다년간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부당한 고가 매입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 생산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수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위법성 판단 기준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며, 당해 염매 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함
-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이어서 그 자체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5)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

위법 행위 유형

- 자신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거래 상대방인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 접대하는 행위
-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 현황, 제품 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교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거래 강제

-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행위 유형

- 고가 기계나 장비 판매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기워팔기)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기워팔기)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사원판매)
-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미달성할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협력업체 탈락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 실무

6)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거래상 지위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일방 사업자의 타방 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상당한 경우를 의미
 - ▶ 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 하며, 이와 더불어 당해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 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상 본사와 협력업체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를 의미함

○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입강제

-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었거나, 주의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경제상 이익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
- 계열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자신이 부담 하여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 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찬조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거래조건에는 각 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
-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 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을 감축하는 행위

경영간섭

- 임직원 선임·해임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사의 임직원 선임 등의 경우에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협력사의 생산품목,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 실무

7)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구속 조건부 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는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하며, 독점 공급계약과 독점 판매계약을 모두 포함.
- 경쟁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 영향력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다수 거래 상대방과 업무 제휴시 경쟁사와 중복 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등

◦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 방해 활동 네 가지 유형이 존재

사업활동 방해 유형

- 기술의 부당 이용
 - 타 사업자의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타 사업자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방해하는 행위
 - ▶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로 국한되지 않고, 기술이란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해 보호 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영업 관련 사항을 의미
 - ▶ 한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 이때 타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성은 유인 및 채용 의도, 해당 인력의 사업활동 차지 비중, 인력 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
 - ▶ 한편,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는지는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
 -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에 대하여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여 스카우트 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거래처 이전 방해

- 상대방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구입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 여기서 사업활동이 심히 방해되는지는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 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 감소, 거래 상대방 감소 등으로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함

•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 위 행위 외, 자기 능률·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 사업 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전달을 살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함

II. 공정거래법 실무

8)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4%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는 1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형사처벌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과 함께 처벌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가능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 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손해의 3배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사례
01

2개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거래거절사건 ('17.1.25.)

- 법 위반 사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기타의 거래거절

- ▶ 한국조에티스(주), (주)벨벳은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한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동물약국으로 유출 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차단함
- ▶ 이러한 약품 공급의 차단은 해당 약품이 싸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함 이었음
 -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음

(제재) 위 2개사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사례
02

DVM 회원 수의사들의 구속 조건부 거래사건 ('17.1.25.)

- 법 위반 사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 조건부 거래'

- ▶ 위 거래거절 사건 관련,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은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
 - 약품 공동구매, 불매운동 추진 등을 빌미로 제약사 등을 압박
 - 이에 제약사 등은 더욱 동물병원에의 공급 거절 정책을 철저히 시행할 수 밖에 없었음

(제재) 해당 수의사들에게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공표 명령)

II. 공정거래법 실무

사례

03

울산 항운노조의 경쟁 노조 사업활동 방해 사건('21.3.18)

• 법 위반 사항: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 울산 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던 중, '15.8. 온산 항운 노조가 추가로 공급사업 허가 받자,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농성용 텐트·차량·조합원 등 동원하여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으로 경쟁자 작업장 진입을 방해 온산노조는 부두 진입 불가로 관련 하역 작업 중단 및 고객과 계약 해지

(제재) 울산 항운노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사례

04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21.6.23.)

• 법 위반사항: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현대건설기계는 '09.6.~'16. 2.동안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

▶ 위법성 판단
 - (거래상지위)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으며, 모두 현대 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 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짐
 - (부당성)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 시킨 것으로 부당함

(제재)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55억원 부과

불공정거래 행위

Q&A

Q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A

▶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그리고 경쟁자에 의한 염매를 방지하고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
 ▶ 공동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됨
 ▶ 기타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유력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 배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인정

Q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대금결제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

A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협력업체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협력업체에 대금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인센티브 성격) 하는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대금결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차별 행위는 부당 차별 취급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II. 공정거래법 실무

Q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갑"의 거래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A

- ▶ 사업자는 거래처 및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처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음
- ▶ 다만, 부당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거래거절)는 공정거래 저해 우려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됨
- ▶ 여기서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의 필수성, 대체거래선 존재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의 곤란성 등), 거래거절의 사유등 합리성 유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 따라서, "갑"이 "을" 이외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을"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갑"의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갑"과 거래시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정당한 사유로 거래를 거절하였다면 부당거래거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Q

회사 업무를 타 회사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A

- ▶ 경영간섭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경영간섭 부당성 여부, 기타 합리적 사유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영간섭의 내용이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 해당 업무를 승인을 받게 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Q

A회사는 경쟁 사업자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A

- ▶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두어 금지하고 있음
- ▶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함
- ▶ 예로, 치약제조사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하고 있음
- ▶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의 경우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의 경우 그 행위 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라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 ▶ 따라서 A회사가 부당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II. 공정거래법 실무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규제

1) 기업집단의 의의

- 의미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기업집단의 범위
 -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 겸임 등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기업집단 규제 개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현황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매년 4월 말까지 해당회사의 국내회사 주식 소유 현황, 계열회사 및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등에 대하여 신고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는 공인 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재무상태표를 사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유가증권, 자산거래, 상품/용역/거래 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관련 채무 보증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집단 지정 요건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직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비금융·보험회사)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금융·보험회사) 5조원 이상

II. 공정거래법 실무

2)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공시의 주체)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주체

- 공시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에서 지정
- 공시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공시의무 없으며,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포함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 통지일부터 적용

내부거래 공시 주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제31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시행령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내부거래 공시 대상 회사"라 함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거래 유형)

- 적용대상 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음

(1) 자금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증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3) 자산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4) 상품 또는 용역 거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정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공시

- ▶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 용도의 사무실 공장 등을 건축, 계열회사 제품의 운송 등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계열사의 상품기업 브랜드 광고를 의뢰 받아 제작 및 집행하는 업무 등)

II. 공정거래법 실무

4)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적용 대상 거래 상대방 등)

-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자금 / 유가증권 / 자산거래시
 - 자금·유가증권·자산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동일인(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그룹 총수)
 - ▶ 동일인관련자
 - 동일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동일인 법인인 경우 해당 없음)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단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음(국외계열사와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유예)
 -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용 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등
 -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 상품 / 용역 거래시
 - 상품 · 용역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해야함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 계열회사의 범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
 - A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이하 "B")
 - ▶ A와 B간 상품용역거래 시 A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 (단, B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지분 20% 미만인 계열사일 경우)
 - ▶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유예)

5)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적용 대상 거래의 기준, 공시 시기 및 내용, 위반시 제재)

- 적용대상 거래
 - 적용대상 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를 말함(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의미).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적용대상 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 상품·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다만, 장 종료 후 시간 외 거래는 공시대상)
 - 공시 시기 및 내용
 - 공시 시기 :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1일 이내, 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
 - 공시 내용 :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限), 거래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 동일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주요내용
 -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 내용의 정정 등의 시정조치 가능

II. 공정거래법 실무

- 과태료 : 공시의무 미이행이나 주요 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및 공시시 과태료를 부과 가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사례

사례 01

기업집단 KT·포스코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사건('17.10.17.)

• 법 위반행위: 舊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 ▶ 공정위의 3개 기업집단(KT, 포스코, 케이티엔지) 소속 86개 계열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개 기업집단(KT, 포스코) 소속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공시 점검 개요>

- 대상 기업집단: KT, 포스코, 케이티엔지
- 점검 대상기간: 2013년 4월 1일 ~ 2017년 4월 30일
- 점검 방법·일시: 서면·현장점검/ 2017년 7월~ 2017년 9월
- 주요 점검 사항: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

- ▶ 공시위반 사항(KT: 12건/포스코: 2건)

-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 예1) 계열사간 자금, 유가증권 거래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또는 이사회 의결 후 미공시
 - 예2) 계열사 차입금 담보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제재) 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총 4.99억원 부과(KT 총 3.59억원, 포스코 1.4억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

Q&A

Q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지?

A

- ▶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음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동일인 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Q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A

- ▶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함
- ▶ 다만, 그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음(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 개념)

*상법 제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회사 설립의 조건에 좋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II. 공정거래법 실무

Q

현재 A라는 회사에 대해 지분을 충족하고 있지 않고, 다만 소속회사 임원 B가 AA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을 뿐임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 등 없음)이 경우, A사는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A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겸임 사실만으로 바로 계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다만, 임원 겸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A사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계열사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음
 예) : 임원 B가 10% 지분을 보유(나머지 90%는 B의 배우자) 하고 있고, A사 대표로 재직 중인 경우

Q

'21.12. 전면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변경된 거래 현황 관련 공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 ▶ 모든 계열사와의 물류 또는 IT 서비스 상품 용역 거래 현황 공시(매년 5/31 까지. 신설)
- ▶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매년 5/31 까지. 신설)
- ▶ 직전 사업연도까지 국내 계열사에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 공시 시, 분기 별 거래 금액도 함께 명시(변경. 국외 계열사 매출액은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거래금액 공시)

5. 부당지원행위 규제

1)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 의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①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 행위 유형

부당한 자금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의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상품, 자산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용역·상품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높거나 낮은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타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타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 또는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 대비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타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 실무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자금거래의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 이러한 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 이러한 지원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구체적 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 계열 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 계열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 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 계열 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 단체 퇴직보험을 금융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 계열 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 주식매입 않으면서 증권 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사에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제 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거래한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함.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 행위 중 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 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

○ 구체적 예시 (1)

-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 계열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 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 고가매입]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인수 등의 방식을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II. 공정거래법 실무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구체적 예시 (2)

-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주식 고가매입]
- ❖ 금융관련 법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 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 수익 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 경영권 방어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 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 총액과 총 전환 가액의 차액 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 비계열 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 부동산을 시기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 하여 지원객체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 재산권 무상 양도]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 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정상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 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함. 산식을 적용함에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 산식 :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 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해당기간 정상 임대료

- 구체적 예시

- ❖ 수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 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 ▶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 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 행위는 실제 거래

II. 공정거래법 실무

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 구체적 예시

-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 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외상매출금, 용역 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 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 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이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상품 용역을 거래한 경우 - 상당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 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
- ▶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부당한 상품, 용역 거래 구체적 예시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 인력 지원 행위 중 전자의 경우에는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 해당 인력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 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

- 부당한 인력 제공 구체적 예시

-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의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 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 지원 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
- ▶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

II. 공정거래법 실무

- 구체적 예시

-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준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2)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

- 부당성의 판단기준
 - 부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 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 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이러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 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 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 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 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자에 비하여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 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 지원주체의 지원 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절차 통해 지원 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 업무 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 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II. 공정거래법 실무

3)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시정명령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지원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

-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형사처벌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양벌규정)

부당한 지원행위

사례

사례
01

와인 판매 자회사에 대한 롯데칠성(주)의 부당지원사건('21.4.8.)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부당지원 제공 및 수령 행위 금지'

- 롯데칠성(주)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자회사 MJA를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었음
- 자회사 MJA가 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MJA 손익 개선 및 백화점 판매 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MJA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지원

<롯데칠성의 부당지원행위 상세>

지원 행위	내용
와인 저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
판촉사원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MJA의 와인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 용역비)을 롯데칠성이 부담 <small>☞ 롯데칠성이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small> <small>※ 롯데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사항</small>
모회사 인력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칠성 직원들이 MJA의 핵심 업무(소매 관련 기획·영업 등)를 담당 MJA는 위 인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롯데칠성에 지급하지 않음

* 위 부당지원행위의 결과로, MJA는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

(제재) ① 시정명령 : 향후 금지명령(3개 지원 행위), 행위 중지 명령(인력제공 금지)

② 과징금 총 11.85억원(롯데칠성 7.07억/MJA 4.78억) 부과

③ 법인 고발 : 롯데칠성(주)

II. 공정거래법 실무

사례
02

SK텔레콤의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 사건('21.7.14.)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 ▶ SK텔레콤(이하 'SK')은 '09. 1. 자사 음원 사업부문인 '멜론'을 당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에 양도.
- ▶ '멜론' 운영주체가 SK에서 분리됨에 따라, 로엔은 타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통사인 휴대폰 결제 청구 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
- ▶ SK는 로엔의 '09년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타 음원사업자와 유사한 5.5%로 적용 했으나, '10~11년에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1.1%로 인하하여 로엔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미수취. 이후, 로엔의 1위 사업자 지위가 공고화 되자, SK는 수수료율을 '09년과 같은 5.5%로 재인상하여 지원 행위를 종료
- ❖ 한편, SK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 해당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SK 내부자료 발췌 >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 Risk에 노출", "SKT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

사례
03

하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사건('21.10.27.)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및 통행세 거래, 제23조의2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사익편취) 금지'

- ▶ 하림그룹 총수, 경영권 승계 위해 계열사 "올풀" 지분 100%를 2세에 증여.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총수와 그룹 본부 개입 하에 물품 고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행위를 통해 올풀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1) 舊 한국씨벤판매(주)13년에 舊 올풀 흡수합병 후 올풀으로 사명 변경).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

❖ 지원 내용

* 고가매입행위

-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의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풀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계열사들은 약 4년간 동물약품을 높은가격으로 구매

* 통행세거래

- 계열 사료회사들의 가능성 사료 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풀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 5년간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풀이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

* 주식저가매각

- 하림지주(舊 제일홀딩스(주))는 '13년에 본인 보유 올풀 주식 100%를 한국씨벤판매 (현 올풀)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
→ 舊 올풀 주식 저가 매각으로 인해 올풀에 약 27억원 부당지원

(제재) (주)올풀 및 8개 계열사 과징금 총 48.88억원 부과

II. 공정거래법 실무

사례 04

(주)SYS리테일 [舊 (주)전자랜드]에 대한 부당지원사건('21.12.1.)

• 법 위반행위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23조 제2항
'부당지원행위'

- ▶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주)SYS홀딩스는 계열사 (주)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 (주)SYS리테일은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주)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제공을 요청
 - 2) 이에 (주)SYS홀딩스는 (주)SYS리테일이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20년 기준 담보물 평가액 약 3,616억원)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
 - 3) 그 결과, (주)SYS리테일은 은행으로부터 약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11년 이상 총 195회에 걸쳐 저리(1%~6.15%)로 차입하여 상품 매입 및 회사운영에 사용

<부당지원 행위 상세>

거래명	지원 기간	적용 법조	비고
전체 대출	'09.12.~'21.11.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7호	지원 주체
신한은행 500억원 대출(650억 담보)	'14.5.~'18.9.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②항	지원 객체
신한은행 200억원 대출(260억 담보)	'14.12.~'18.9.		
신한은행 700억원 대출(910억 담보)	'18.9.~'21.11.		
그 외 대출	'15.2.~'21.11.		

(제재) 1)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교육이수명령

2) (과징금) 총 23.68억원 (감경) : (주)SYS홀딩스(7.45억원), (주)SYS리테일

(16.2억원)

5) 부당지원행위 FAQ

Q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만 성립하는지?

A

- ▶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계열사간 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사 외 제3자와 거래 시 해당 제3자와 당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
 - 예) 당사 계열사가 아닌 역할 없는 제3자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
→ '역할 없는 통행세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

Q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

A

- ▶ A회사가 B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는 법률적으로 별개인 독립한 거래 주체이므로 모회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은 2004.11.12. 선고2001두2034 판결에서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II. 공정거래법 실무

Q

용역 대가를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A

- ▶ 부당지원 행위란 반드시 어떠한 지원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작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거나 방임(부작위)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상대방 사업자에 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러한 부작위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있음
- ▶ 예로, 자금지원 의도로 자산/용역 등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아 지원 객체가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자상당액의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 행위도 충분히 부당 자금지원 행위 해당 가능

Q

계열사 거래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되는지?

A

- ▶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열사에게 발주한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1) 지원 객체에게 경제상이익이 제공된 부분이 있어야 함
 - 수의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차이가 있어야 함
 - 예)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과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율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
 - 2)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부당성)
 - 공익 목적의 수의계약인 경우는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 부당성 판단은 지원 주체 · 객체간 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개요

◦ 요건

- 제공 주체 및 객체
 - 이익 제공 당시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 특수관계인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
 -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 단,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되,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기준

- 이익 제공 행위

- 제공 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짐
- 제공 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 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 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 제공 행위의 범위에 포함
- 다음의 경우에 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음

❖ 제공 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 주체의 매입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 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 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 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 실무

-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 수익 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판단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사업기회의 제공

- (의의)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
- (판단기준)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의미

☞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 되는 요소가 아님

☞ 또한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

- ☞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

☞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이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

- (적용제외)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

◦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의의) 거래 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 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 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시장 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에 따라

II. 공정거래법 실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봄

- * 경쟁입찰 거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 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 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 받고(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만 제안서를 제출 받은 경우는 제외)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 당사자가 선정되었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봄

·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 * 당사자간 상품 및 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는 각 회사 거래금액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는 상당한 규모 미해당 간주
 - ☞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 거래 총액 요건은 해당 연도 거래총액 계산 시 상호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총액이란 제공업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 거래비중 요건은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봄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적용 제외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됨
- 법 적용 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
-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적용 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함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거래 예시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 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 주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 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 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 실무

◦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여야 함. 이 때 효율성 증대 효과는 해당 이익 제공 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은 미포함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 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거래 예시

-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 · 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 통합 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불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함
-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

-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합리적 고려· 타 사업자와의 비교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
- 이러한 필요는 통념상 대체 거래선 수배에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 되는 것으로 봄

거래 예시

-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4)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0%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형사처벌

-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다른 불공정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II. 공정거래법 실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 제공 금지

사례

사례
01

한국타이어그룹의 부품사 수직계열화 과정에서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제재('22.11. 8.)

▶ 적용 법조

- 부당지원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사익편취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

▶ 법 위반 내용

-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14. 2.~'17.12.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 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함
 - *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하여 외형상 매출 이익율(25%) 보다 높은 매출 이익률(40% 이상)을 실현하도록 설계
- 이 사건 지원행위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었고, 한국프리시전웍스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음

☞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계열사간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제재) - 2개 사업자에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80억원 부과

- 한국타이어 고발 결정

사례
02

SK(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사건('21.12.22.)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 경과

- ① SK(주), (주)LG가 보유하던 舊 LG 실트론[現, SK실트론]주식 70.6% 매입
- ② 동일인 최태원, SK(주) 월간 회의에서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매각 입찰에 대한 '본인의 직접 입찰 참여' 관련 검토를 지시
- ③ SK(주), LG 실트론 잔여 지분 미인수 방침 발표. 이후 동일인 최태원이 해당 잔여 지분 입찰 참가 후 취득

▶ 공정위 판단

- LG실트론 잔여 주식 29.4% 취득 기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에 해당
- SK(주)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동일인 최태원의 위 잔여 인수 행위를 묵인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동일인)에 제공하였음
- ※ SK(주)는 최태원 개인의 거래임에도 잔여 지분 인수 전 과정에서 본인의 비서실,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이 해당 거래를 지원토록 하였음
- 따라서, SK(주)/동일인 최태원의 본건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사익편취)규정 위반에 해당

(제재) SK(주)/동일인 최태원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원 부과

II. 공정거래법 실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이익 제공 금지

Q&A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 반드시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 검증된 외부 회사와 거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 어려움

Q

신제품 출시 이전에는 관련 정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 판촉물의 제작 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한 경우 보안성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 가능한지?

A

▶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가 가능하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긴급히 업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 납품기일은 회사 외적인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미해당 하므로,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7.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1) 기업결합제한 제도 개요

◦ 의의

- 기업결합이란 2개 이상의 기업들이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지배체제가 되는 것을 의미
- 기업결합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시장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시장을 경쟁제한적으로 변모시킬 우려도 있음
- 이에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그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제한유형

-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대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제외

◦ 경쟁제한성 있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는 경우

- 기업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
 - 1) 시장점유율의 합계(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1개 사업자 50% 이상, 3개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해당할 것
 - ② 해당 거래분야에서 1위일 것
 - ③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일 것
 - 2)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아래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II. 공정거래법 실무

- ①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 결합일 것
- ②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2)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 1) 당해 기업결합 외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 보다 큰 경우
 - 2)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 설비등 자산이 당해 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3) 기업결합의 신고

- 신고 대상인 회사
 - 신고 의무 발생 기준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들의 규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
 - 회사 규모 기반 기준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 합산)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 필요
 - 신고 회사와 그 상대방 중 어느 한 회사라도 그 규모 미충족시 신고의무 부담하지 않음
 - 거래금액 기반 기준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한 적이 있거나, 직전 3년간 국내 연구 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 필요

4) 심사기준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 종류

- 간이 심사 대상 기업결합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 관계인인 경우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 회사(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회사 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제외)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 회사를 기업 결합한 경우
 - 일반 심사 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에 회사간 결합하는 경우

5) 기업결합 신고 기한

- 내용
 - 사후 신고 원칙: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예외적 사전 신고 의무
 -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 회사인 경우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계약체결일등 시행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기업 결합일까지 미리 신고 필요
 - 기업결합일 : 아래의 일자를 의미
 - 주권 교부일(주권 교부시), 주식대금지급일(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납입기일 익일(신증상 취득시, 회사설립 참여시), 주총 임원선임 결의일(임원 겸임시)
 - 영업 양수대금 지급 완료일(영업 양수시)
 - 영업 양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대금 지급시)
 - 합병 등기일(합병시)

II. 공정거래법 실무

6) 사전 심사 요청

◦ 내용

- 신고기간 전이라도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결과를 30일 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통지

❖ 기업결합 신고 관련 사항 요약표

구분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 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회사 신설 참여	주금 납입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	결합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회사 신설 참여	주총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7)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위한 조치 명령
- 회사 합병, 설립 조항 위반시 공정위는 합병 무효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가능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

이행강제금

- 시정조치를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이행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1일당 아래 금액의 0.0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단, 임원겸임 위반시에는 1일당 200만원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 ▶ 주식소유 위반 : 소유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합병위반 :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 영업양수 위반 : 영업양수 금액
-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 의무

형사처벌

-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행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II. 공정거래법 실무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사례

사례
01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건('21.8.24.)

▶ 개요

- 공정위의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 심의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건부 승인

▶ 경쟁제한성 판단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 있는 것으로 판단
- * 판단 사유 :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제재)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 (이행기간: '24.12.31. 까지)

<주요 시정조치 내용>

- ①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② 단체가입 수신계약체결 거부·해지 금지,
- ③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택채널 임의 감축 금지,
- ④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⑤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⑥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⑦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부당 기업결합의 제한

Q&A

Q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 A, B, C가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 회사는 누구인가?

A

- ▶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
-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 최다 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
- ▶ 질문의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 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 의무 대상 회사가 됨
- ▶ 다만,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하나를 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해 신고할 수 있음

Q

임원 선임권이 발생 하였으나, 임원 겸임이 아닌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예)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선임 시키는 경우)

A

- ▶ 공정거래법은 '임원겸임'에 대해 임직원을 타 회사 등기임원으로 겸임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즉, 임원 선임권의 행사로서 임원을 겸임 시키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임원 겸임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II. 공정거래법 실무

Q

A사 직원이 A사의 경영전략과는 무관하게 다른 회사 B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필요한지?

A

-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나 직원이 타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이 경우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 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등기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
- ▶ 단, 직원의 개인적인 겸임 등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등 기업 결합 심사 면탈의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는 가능

8.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1)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 의의

- 2개 계열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보유하게 되는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
-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상호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점을 고려한 것임

-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의 예외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하여 상호출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상호출자 인정
-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 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공정거래법 제21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 불가
- 위반한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의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고리의 형성 외에,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출자 역시 금지

- 계열사간 출자 금지의 예외 : 유예 기간 내 해당 주식 처분 필요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II. 공정거래법 실무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6개월)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1년)
- 「기업구조정 촉진법」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 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기업구조정 촉진법」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 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주식 취득·소유일로부터 3년)

○ 위반 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 금액의 10% 이내 과징금 부과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3)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 의의

-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 보증)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은 금지
- 단,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금지 되는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 주식양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물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 환급 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 인수인도조건수출,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 실무

◦ 탈법적 채무보증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는 탈법적인 채무 보증에 해당

◦ 위반시 제재

- 해당 행위의 중지 및 관련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계열사간 상호·순화 출자 및 채부보증 금지 관련

사례

사례
01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사건('16.5.19.)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현대제철(존속)·현대하이스코(소멸)간 합병에 따라 각 합병 당시 회사 주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신(新)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여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

* (현대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5,741주(4.31%)

* (기아자동차)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0,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3,062,553주(2.29%)

* 10개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판단 사유 :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요금인상 경쟁 압력 약화 등

(제재) 아래 사유 종합 고려 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를 결정

** 고려 사유

- 1) 이 사건 추가적인 계열 출자는 지배력 강화·유지 보다는 침체된 철강시장에서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2) 순환출자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 유권해석(2015년 12월 24일)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점
- 3) 피심인들이 합병 전후로 별도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 4) 피심인들이 추가적인 계열 출자에 해당하는 현대제철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사건 심사 과정에서 조속히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

II. 공정거래법 실무

사례 02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사건('14.9.25)

• 법 위반 사항 : 舊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채무보증 금지 규정'

- ▶ 대기업 집단 대한전선 소속 대한시스템즈(주)는 국내 계열회사인 (주)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한국·진흥·경기·영남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08.6.~'12.4.간 최대 280억 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
- ▶ 이러한 대한시스템즈(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제재) 대한시스템즈(주)에 과징금 4.76억원 부과

상호·순환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Q&A

Q

A사 B사, C사가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A사가 C사 지분 약20%를 가지고 있고, B사는 A사 C사가 지분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합작 회사라면, 이 경우에도 상호출자에 해당하게 되는지?

A

- ▶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Q

계열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물권담보, 예금담보 등)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지?

A

- ▶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인적보증을 의미하므로, 물적보증(물권 담보, 예금 담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따라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 금융기관 여신에 대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하여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 다만, 백지어음 제공의 경우 사실상 인적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

Part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하도급법의 이해
2. 계약 체결 관련 의무
3. 하도급대금 결정등 관련 의무
4. 계약 이행 관련 의무
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무
6. 기술탈취 금지 의무
7.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의무
8.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1. 하도급법의 이해

1) 기본 사항

- 의의

- 하도급법상 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 27470판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의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자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 우를 말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자가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위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 용역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 2)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작성은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3)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 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2. 계약 체결 관련 의무

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내용

- 서면발급 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이때 발급의 기준은 양사 기명 날인 시점이 됨

- 서면의 기재사항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 서면의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 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단, 기술자료 관련 거래자료는 7년).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전자 문서도 동일)

-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 필요)

- 계약시 주의사항

- ▶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발행에 해당
-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서면 지연 교부)
- ▶ 하도급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 서면발급에 해당

- 보존 대상 서면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5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명세서,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2) 부당특약의 금지

◦ 내용

- 부당특약

하도급 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계약조건"은 "하도급 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하도급법 제3조의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서면 미기재 사항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금지
- ▶ 계약서 외 기타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무 비용을업체에 부담 시키는 것도 不可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기타서류 - 예시

현장설명서, 입찰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계약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환경에 관한 협약서,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협약서, 각서, 확약서, 합의서 등(명칭불문)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 승인을 얻어 관련 보험의 사업주 지위 이전
- ▶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되어야 함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예시

민원처리 비용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령·거래관행·목적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 입찰내역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산출내역서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작성, 제출하여 낙찰 받은 내역서

-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 단,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하도급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호

- 아래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매출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예)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등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사례
01

경남기업(주) 및 준법 건설(주)의 서면지연 교부, 부당특약 설정 사건

('22. 3.10.)

• 법 위반 사항

- 1) 경남기업(주)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의무 및 제3조의 4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해당 변경 공사의 착공 후 11일~47일이 지연된 시점에 발급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 예1) 공사 민원은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예2) "들은 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 한다" 등
- 2) 태평로 건설(주)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특약 설정 금지'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 예1) 원도급사는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예2) "사고 발생 시민 형사상 책임 · 제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제재) 위 2개사에 재발방지 명령

• 기타

- 본 건 조치는 산재 비용 부당전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
 - ☞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다수 업체·중대재해 다수 발생업체, 공공 기관 제보 업체 등 25개사 대상 21.5.~'21. 9. 동안 공정위 직권 현장조사 실시
- 부당특약 유형 및 건수 등 기준, 상대적으로 위반사항 경미한 17개 업체는 경고조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Q&A

Q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의 도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우선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된 정식 계약 서면은 추후 발급하여도 무관한지?

A

- ▶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 등 서면의 경우, 양 당사자 기명 날인이 완료된 완전한 서면 이어야 함
- ▶ 일방 당사자의 인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업무 지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되므로 유의
- ▶ 한편, 그러한 "완전한 서면"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급 완료되어야 함

Q

어떠한 계약 조건들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될 수 있는지?

A

-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 ▶ 이러한 부당특약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하여도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첨부문서 등 포함)
- ▶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 일체 요구 불가

☞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이외 공사비 증액 요구는 불가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전체 시공에 필요한 업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금액 5% 미만의 경미한 추가 비용 발생시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한다.

3. 하도급대금 결정 등 관련 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부당한 방법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하거나 다른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부당 감액 금지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 이자(15.5%)를 지급하여야 함

부당 감액 행위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고객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구매강제 행위 예시

- 구매·외주 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 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가능
- ▶ 하도급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 시에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필요
-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구체적인 조정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 비율을 적용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 조정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 조정 기준시점 이후 잔여 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 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 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첫번째 항에 따라 적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물가변동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 물가변동 조정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필요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4) 공급원가 등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의무

- 내용

- 조정협의 신청

-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조합의 협의 개시 요건

- ▶ 아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위와 같은 협의 가능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 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이상인 경우

- 조정 협의 의무의 발생 요건 및 의미

- ▶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건비 상승, 저가 수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로는 인정 불가'
- ▶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도급법위반이 아니지만, 원사업자가 그 조정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 경우

- 조정 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 개최, 의견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의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의 신청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 정당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사례 01

(주)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건(21.11.14.)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 (주)부영주택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함.
- ▶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

하도급계약명	계약 체결일	최저 입찰금액 (A)	최종 결정금액 (B)	인하금액 (A-B)	비고
□ □파트신축공사중 조경식재공사등	'17.2.20.	8.74억	8.6억	0.14억	재입찰/ 추가협상
○ ○아파트신축공사중 조경식재공사등	'18.6.11.	27.76억	27.4억	0.36억	재입찰

(제재) (주)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31억원 부과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사례 02

태양금속공업(주)의 부당 감액 및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사건('21.9.23.)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부당감액 금지', 제4조 제2항 '부당한 대금 결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

- ▶ 태양금속공업(주)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0만원을 감액하고,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 종전 단가 대비 인하액 총 1.77억원
- ▶ 또한,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수수료 약 500만원을 미지급

(제재) 태양금속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사례 03

현대산업개발(주)(이하 "HDC")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사건('21.12.30.)

- 법 위반 사항 :

-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공사등 건설·제조위탁 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 착공 또는 납품 개시한 후 최소 3일 ~ 최대 413일 지연 발급
- 2)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 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미지급
- 3)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
- 발주처 증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와 변경 계약 체결

(제재) HDC에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사례 04

신태양건설(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사건('21.6.30.)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신태양건설(주)는 자신이 지분 49.5%를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돋기 위해 관련 하도급업체에 위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17.3억원)를 분양 받을 것을 요구.
- ▶ 이에 하도급 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 (계약금액 74.5억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위 7개 상가를 분양 받음.

(제재) 신태양건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사례 05

지안건설(주)의 부당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제공 요구 등 사건 ('21.9.23.)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지안건설(주)는 협력업체에 공사 위탁 시 다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음
 - 1)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계약서와 별개로 공사약정서에 아래의 계약조건 설정
 - ① 공사 중 발생 민원,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인·허가 등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2)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1.2억원 제공 요구 후 수령

(제재) 지안건설(주)에 재발방지 명령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사례
06

수급사업자로부터 부당이익 수취한 (주)지에스리테일 제재사례 ('22. 8. 3.)

• 법 위반 사항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장려금 68억여 원, 판촉비 126억여 원, 정보제공료 27억여 원을 수취하였음.

- ❖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 장려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급업자로부터 수취함.
 - ❖ (판촉비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고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음.
 - ❖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 수급사업자들은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지에스리테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였음.
- *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함.

(제재) (주)지에스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여 원 부과

대금 결정 등

Q&A

Q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A

- ▶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 유무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은 조정기준일 이전 체결된 하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없음
- ▶ 단, 계약 지연 등으로 정식 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조정 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Q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관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A

-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법 규정과 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됨
- ▶ 하도급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 ▶ 한편, 본건 질의와 같이 하도급 계약에 물가변동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침해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하는 부당특약으로 인정 소지 있으므로 유의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Q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금액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A

- ▶ 투찰금액 변동이 없었다 하여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 사업자에 불이익 발생 우려 존재
- ▶ 따라서, 본 건 질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성이 높음

Q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한 품목의 단가 단위를 절삭(10만원 이하 단위 절삭 등) 하여 하도급금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A

-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부당 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원 이하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4. 계약 이행 관련 의무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

- 부당한 위탁취소 위법성 판단

- ▶ 부당 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 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
- ▶ "임의로" 위탁취소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가 해당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 위 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실질적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 등이 정상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신형 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예시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고객 클레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3) 부당반품의 금지

- 내용

- 의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 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부당반품의 예시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 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4) 목적물의 검사

- 내용

- 목적물 검사 의무

- ▶ 위탁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밸ჭ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 검사결과 통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 검사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계약 이행 관련

사례

사례
01

(주)신성이엔지 및 (주)시너스텍의 부당반품 등 사건('22.3.23.)

• 법 위반 사항 :

1) 서면 미발급 (하도급법 제3조 위반)

- (주)신성이엔지와 (주)시너스텍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 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

2)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법 제10조 위반)

-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 사업자에게 반품하였음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 미지급

(제재) 위 2개사에 시정명령, 시너스텍(주)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사례
02

명가토건(주)의 부당한 위탁취소사건('21.9.6.)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8조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명가토건(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업무를 위탁한 후,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 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존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 업무를 해지

** 명가토건(주)는 해당 계약 해지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

(제재) 명가토건(주)에 재발방지 명령

사례
03

(주)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사건('22.2.28.)

• 법 위반 사항 : 사전 서면 교부 의무,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주)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 시기 등 하도급법상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2)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납품 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의 피해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는 별개 위탁 건인 마스크 팩 원단의 수령을 거부

(제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계약 이행 관련

Q&A

Q

현재 하도급계약 이행 중인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소속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임.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A

-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
 - ▶ 본건의 경우, 업체 재정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에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시는 반드시 1) 하도급 계약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2)동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 ** 해당 계약상 해지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한 내용인지(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Q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 당사에 해당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급사업자에 양해를 구한 다음 물품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려 보낸 뒤 이를 잠시만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 이 경우 부당반품에 해당하는지?

A

- ▶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 사업자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충칭함
- ▶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반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 물품보관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음

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의무

1) 선급금의 지급

◦ 내용

- 선급금 지급 의무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여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유형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을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의 지급

◦ 기본원칙

-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을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지연이자 등의 지급

- ▶ 선금금, 하도급대금을 위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필요
- ▶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 이율에 따름(22. 4. 기준 연 15.5%)

- 현금지급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
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불가
-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의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함

- 중견기업에의 적용

- ▶ 하도급대금 지급 조항은 중견기업과 원사업자간 거래에도 적용

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의미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 대물변제시 서면 교부 절차

- ▶ 원사업자는 변제 전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수급사업자에 제공
- ▶ 변제 시 지체 없이 원사업자 자료 제시일, 자료 주요 목차,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은 사실, 양 당사자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교부

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및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내용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
 - ▶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필요
 -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
- ▶ 내국신용장 개설 시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필요
-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전/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함
 1.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위 사유들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필요
-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 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예외

-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등
-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사항

- ▶ 본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 금액은 차감하여 지급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자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필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사례

사례 01

(주)새롬어페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건('21.9.9.)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 (주)새롬어페럴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서면 미발급)
- ▶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의류를 판매하던 중, 의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5.82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대금 미지급).
- **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통지 없었고, 상당수 제품은 이미 판매하였음

(제재) (주)새롬어페럴에 재발방지 명령 및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사례 02

동우콘트롤(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사건('21.6.30.)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 동우콘트롤(주)는 협력업체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이 지급한 사급자재를 협력업체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 받은 목적물 대금 일부인 0.8억원을 미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총 0.1억원도 미지급함.

(제재) 동우콘트롤(주)에 재발방지 명령 및 미지급 지연이자 0.1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Q&A

Q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A

-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라는 점 입증 필요
-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요행위는 절대 금지됨

Q

수급사업자가 본인의 건설현장 노동자에 노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A

- ▶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직접 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 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미발생 (노동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님)
-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Q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A

- ▶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그 만기일 이전에 부도처리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해당(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Q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서를 미제출하여 계약에 따라 하자 보증금 및 하자보수용 자재 대금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 보증서 제출시까지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A

-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은 목적물 납품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 보증서 등이 미제출되어 그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는 상기 참작사유 해당 가능

Q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수급 사업자와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 ▶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Q

도급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A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6. 기술탈취 금지 의무

1) 기술자료의 의의

- 기술자료의 정의

판단	① 비밀관리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의	협력업체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 中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기타 정보·자료 中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시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장비 제원, 시방서, 기계운용매뉴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실패한 연구보고서 포함),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기술자료 관련 법적 요구사항

- 원칙적 금지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유출/유용 행위
- 기술자료 요구 허용 :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자료 요구 가능
 - 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최소한의 범위 내
 - ③ 사전협의 및 서면(법정사항 기재) 발급
- 기술자료 수령 전 자료 제공 업체(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 반영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필요

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개요

-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원칙적으로 위법
-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정당한 사유 여부 예시

-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제품 하자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공된 기술자료의 전체 완본을 요구 → 위법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아래 법정 기재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 하여야 함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기술자료의 요구 방법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발급
 - ▶ 시기 : 기술자료 요구시 발급
 - ▶ 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등 하도급법이 명시한 법정 기재사항 모두 기재 필요
- ※ 법정 기재사항
 1. 기술자료 요구목적
 2.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3.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4.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발급 : 양 당사자 서명-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당사자 서명 필요.

일방 당사자의 날인만 있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

-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유출 불가

▶ "부당하게"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에 기재한 요구목적, 합의된 사용범위 등을 벗어나서"

▶ 유용/유출 :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유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유출)

▫ 유용

예)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최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

▫ 유출

예) 계약 이행을 위해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입찰 설명회 자료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경쟁자에 무단으로 전달하는 행위

3) 기술자료 유사 개념 : 경영상 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

◦ 내용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불가

▶ 정당한 사유 :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구 가능

예1) 원사업자가 법령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여 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중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4) 미양산 또는 시장가격 미형성 품목의 하도급계약 관련 정산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위반 시 "부당 경영간섭 행위"로 처벌

▶ 단, 정보 요구 시 별도의 요구 서면 발급은 불필요

- 경영상 정보의 종류 및 예시

경영상 정보의 종류	예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명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납품조건 (납품가격 포함)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 시 사용하는 전산망의 고유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 접속을 위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구매시스템의 명칭, 접속 비밀번호 등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기술탈취 행위

사례

사례 01

피에이치에이(舊 평화정공)(주)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사례(22.8.26.)

- 법 위반 사항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위반 [하도급법 제12조의3]

▶ 피에이치에이(주)는 '19~'20년 A 협력사의 기술자료 (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22건의 도면을 정당 사유 없이 요구하였으며, 동 업체 포함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 (기술자료 유용) 피에이치에이(주)는 회생절차 중인 A협력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제안 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 개발을 제3의 업체인 C 협력사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A 협력사 자산은 인수하지 않음
- A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하여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
- A협력사 도면의 자사 도면화 작업 (A협력사로고, 수정이력삭제 등)에 착수 하여 이를 완료 후 본인 소유 도면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
- B업체 제작도면과 본인이 보유한 A협력사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C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
- 본인 소유 도면으로 등록한 41건도면 중 39건을 C협력사에 제공하여 C협력사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A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을 납품토록 함
 - *일부 단종 품목 외 나머지 품목은 현재까지 납품되고 있는 中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A협력사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을 통해 필요도면으로 파악한 도면 59건 중 미보유 도면을 A협력사에 요구하여 22건을 수령
- (서면 미교부) A협력사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C사에 제조위탁 서면을 지연 발급함

(제재)

행위	제재
기술자료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재발방지, 기술자료 반환/폐기 및 이행결과 서면보고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7억 8천만원), 법인 고발
기술자료 요구	과장금(2억 5천만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과장금(5천 8백만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서면미발급행위	경고

사례 02

엘지전자(주)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사건(22. 3. 7.)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요구 요구서면 발급'

▶ 엘지전자(주)는 협력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발급하였음

** 요구기술자료 :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

- 승인도 : 제품 공급 전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승인원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약정된 검사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제재) 엘지전자(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44억원 부과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사례
03

엘에스엠트론(주)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사건('22.3.3.)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1)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 엘에스엠트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후,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함.

2)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엘에스엠트론(주)은 금형 설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3)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 또한,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 기술자료 요구 목적이 정당 하더라도, 법정 요구 서면은 교부 되어야 함.

(제재) 엘에스엠트론(주)에 시정명령 및 쿠퍼스탠다드((주))에 과징금 13.86억원 부과

* 엘에스엠트론(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주)가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례임

사례
04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기술자료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사건 ('18.7.18.)

- 법 위반 사항 :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1) 382건 승인도 관련

- 요구 서면 미발급
 - 3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도 382건을 수령하면서 법정 사항 기재 서면 미발급 이메일, 전화로 요구

2) A社의 에어컴프레셔 도면 관련

- 기술자료 부당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 수급사업자 A社에 에어탱크 단품 도면 제공을 요구

3) B社, C社의 기술자료 도면·승인도 관련

- 기술자료 유용
 - ① 소형 에어컴프레셔 도면 유용
 - ▶ 수급사업자 B社의 소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도면을 甲社에 전달
 - ▶ 甲社는 전달받은 도면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완성
 - ② 중형 에어컴프레셔 승인도 유용
 - ▶ 수급사업자 C社의 중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승인도 甲社에 전달
 - ▶ 甲社는 승인도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4) K社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 관련

- 기술자료 유출
 - 수급사업자 K社의 냉각수저장탱크 승인도를 입찰자료에 포함하여 입찰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5개 경쟁사에 전달하고 공급 가능 여부 확인

(제재) 두산인프라코어(주)에 시정명령, 과징금(3.82억), 법인 및 임직원 5명 고발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기술탈취

Q&A

Q

물품의 제작 도면은 기술자료 인지?

A

- ▶ 도면의 기술자료 여부는 자료의 명칭·형태·종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하도급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① 비밀로 유지된 ② 제조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Q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기술자료의 유용, 유출 해당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 ▶ 업체 입찰제안서의 기술자료를 직접 유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 유출한 경우 [유출]
- ▶ 수령한 기술자료를 납품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유출]
- ▶ 사전에 정한 기술자료 반환·폐기 기한을 위반하여 반환·폐기 없이 해당 자료 사용하는 경우 [유용]
-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업체 변경 위해 기존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 거래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Q

기술자료 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A

-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 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
-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

7. 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의무

1) 부당 경영간섭·보복 조치·탈법행위의 금지

◦ 내용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보복 조치의 금지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 행위의 금지

-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III. 하도급법 실무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부당 경영간섭 행위	사례
	<p>(주)포스코케미칼의 19개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제재사례 (22.11.4.)</p> <p>• 법 위반 사항 :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5 조 제1항 제6호 등)</p> <p>-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함 * 하도급법상 위탁거래를 한 13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도급법 우선 적용규정 감안), 나머지 6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p> <p>• 법 위반 내용 (경영관리 기준 설정) 포스코케미칼은 '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 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하여 옴 -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 실시 -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 준수 여부 지속적 감시</p> <p>(평가반영)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 부과 근거로 활용함 - 평가결과 열위 업체로 2~3회 연속 선정 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 축소 가능, 임원 임기 및 연봉기준 조정 가능</p> <p>(임원인사 개입)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 -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협력사에 임원교체를 관찰시키기 위해 지속적 압박 진행</p> <p>(제재)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8천만 원(감정)</p>

8. 하도급법 위반시 제재

1) 상세 제재내용

제재 유형	내용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공공입찰 참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 위반사업자로서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벌금 대상 규정위반 외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순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다음 경우는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미만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 위탁취소/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 - 보복조치

Part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관련 체크리스트
2.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Tool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정도경영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도경영실 조성필 프로
 - 연락처 : 054-222-4744
- 현재 본 편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 부당공동행위 자율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모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계 협회, 관계자 등의 모임에 참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모임에서 가격, 거래 상대방, 입찰 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가 언급 된 적이 있습니까? - 해당 주제 언급 시 관련 협의 또는 합의가 진행 되었습니까? - 협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찬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내부 문건(보고서, 회의록, 배포자료 등) 작성시 관계사 와의 “협력”, “정보공유”, “교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가격협의, 정보공유, 교류 등)이 적힌 이메일, 수첩, 달력, 메모 등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영 간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이나 특별 회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고 단가, 원가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정보교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정보교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인상등 특정업체를 제한 할 목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하였습니까? 			
단가 결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단가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래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 한 사실이 있습니까?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거래 단계별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자율점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거래개시	•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 거래개시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신규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 물품 구매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 해달라고 요청 한적이 있습니까?			
	• 물품 구매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 해달라고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습니까?			
거래계속	•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 조건, 결재대금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인채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래종료	•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 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단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사전 서면 발급	• 업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또는 당사가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기 이전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면이 발급 되었습니까?			
	• 하도급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계약 조건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까?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합니까?			
	•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계약 수행 단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선급금의 지급	•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이 지급 되었습니까?			
부당취소/ 수령거부	• 위탁(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취소 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등)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 수급사업자에게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영간섭	•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기술자료 요구, 인사사항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IV.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계약 수행 단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기술자료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계약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 협의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양 당사자 기명날인 완료) 하였습니까?			
	• 기술자료 수령 전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등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까?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증액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습니까?			
	• 공급원이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개시 하였습니까?			

○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수행 마친날, 납품등이 잡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지급되었습니다?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연이자/ 어음수수료 등 지급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가 어음 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가 지급 되었습니다?			

○ 계약 종료 단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	X	해당 없음
검사결과 통지	• 납품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목적물이 납품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가 통지 되었습니까?			
부당반품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당감액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리, 제조 등을 위탁할 당시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까?			
불이익 제공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하였습니까?			

Part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PH솔루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 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주관부서와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함에 있어 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자체 없이 CP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고시, 지침을 말한다.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직원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란 회사 임원 중 CP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 ④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⑤ “담당부문”이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감독하는 실 단위 소속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⑥ “CP 주관부서”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의 지원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 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4.2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4.3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직무 수행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의식을 토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4.4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CP 기획, 운영 및 감독
 - 2. CP 평가·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3. 자율준수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
 4.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기준 및 제도 마련
 5.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등
 6. CP 활동 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7.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포함한 준법경영 지원활동을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겸임할 수 있다.

4.5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5명 내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단,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와 관련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②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의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4.6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위원 요구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3.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
 4.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4.7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문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임명한다.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할 것을 권장 한다.

-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부서 내 자율점검 활동 주관
 4.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제5조 업무 절차

5.1 자율준수 의지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 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 한다.

5.2 CP의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반기 1회 이사회(ESG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CP 주관부서는 CP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CP 주관부서가 판단하여 임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주기적 (연 1회이상)으로 개정하며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4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한다.
 1. e-러닝 과정을 이용한 on-line 교육
 2. 각 부서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line 교육
 3. 공정거래 캠페인 및 뉴스레터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5.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 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CP 주관부서는 의무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미이수자는 공정거래 관련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 및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된 개선사항을 사항을 다음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5.5 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

- ① 임직원들은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자율점검 결과 법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5.6 공정거래 모니터링

- ①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문(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감사부서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5.7 위험성평가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 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 ②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 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관리한다.
- ③ 위험성평가 관련사항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 위험성 식별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5.8 CP 운영의 효과성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를 받거나 외부 전문 기관에 CP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9 상담,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각 부서 공정거래 실천리더 또는 업무 담당자는 자율점검시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에 상담을 의뢰해야 한다.
- ③ 상담요청인은 상담 전 공정거래 웹사이트, 모바일 앱, 자율준수 편람 등을 통한 자율점검을 먼저 실행한 후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 ④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상담인은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⑥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 ⑧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5.10 제재 및 포상

- ①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CP 주관부서나 이를 인지한 부서 책임자는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 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CP주관부서의 징계요구는 내부감사 지침에 따르고,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및 상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③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민 형사상 제재로 벌금을 부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포상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 기록 및 관리

6.1 문서의 관리

-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본 지침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 서식종류 및 작성방법

해당없음.

부 칙

이 지침은 2023. 6.1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 8.14부로 개정, 시행한다.

○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 내부신고 시스템이란?

기업 소속 구성원들이 기업에 내재된 불법·부정·비리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 내부신고 시스템 종류

온라인	사이버신고	사내 홈페이지 및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익명을 선택하여 분야별로 신고 접수함
	이메일	신고·상담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고 접수함
오프라인	방문 및 면담 (정도경영실)	제보자가 정도경영실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함
	유선 상담	제보자가 정도경영실로 전화 하여 신고 접수함

• 내부신고 유형

공정거래 신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 또는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신고
갑질행위 신고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비윤리행위 신고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신고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 신고방법

- PC, 스마트기기 : 사내 홈페이지(www.poscophsolution.com)을 통한 접속
- 이메일 및 전화 : pimang99@poscophsolution.com으로 메일 전송
또는 054-222-4744으로 전화
- 방문 : 포스코PH솔루션 본사 1층 정도경영실 방문

○ 신고된 내용은 비밀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 이력

NO.	제·개정일	개정사유 및 개정사항
1	2024.02.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최초 제정
2	2024.09.10	(1차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최신화
3		
4		
5		
6		
7		
8		
9		
10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 행 처 : 포스코PH솔루션

방 행 일 : 2024년 9월

발행부서 : 경도경영실

편집/제작 : 인디애드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POSCO PH Solution Compliance Guidebook

posco
포스코 PH솔루션